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97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문금주 · 김병주 · 이정문  
복기왕 · 이광희 · 정일영  
정진욱 · 허성무 · 권향엽  
이개호 · 이주희 · 용혜인  
의원(12인)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을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 회장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으로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25조의7).

나. 회장선출기구를 설치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함(안 제130조·제130조의2).

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3조, 제144조 등).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호 중 “조합감사위원장”을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제4호 중 “조합감사위원장”을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1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7(정보공개심의회) ① 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전무이사가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회장선출기구) ①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원조합장

2.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선거인은 회원인 조합의 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에 의하여 선정되는 사람은 조합의 종류, 품목의 특성, 사업이용실적,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 선거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를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위원”으로, “선임한다”를 “선임하되, 회원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1조 후단 중 “(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임원 및 <u>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u></p> <p>4. 5. (생략)</p> <p>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p> <p>1. ~ 3. (생략)</p> <p>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u>조합감사위원장</u></p> <p>② ~ ④ (생략)</p> <p><u>&lt;신설&gt;</u></p>	<p>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조합감사위원회 위원</u> -----</p> <p>4. 5. (현행과 같음)</p> <p>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25조의7(정보공개심의회) ①</u> <u>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u>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u></p>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전무이사가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 ⑪ (생략)

<신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2(회장선출기구) ①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원조합장

2.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선거인은 회원인 조합의 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에 의하여 선정되는 사람은 조합의 종류, 품목의 특성, 사업이용실적,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 선거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7명-----  
-----.









